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483
----------	-------

발의연월일 : 2026. 9. 21.

발 의 자 : 김병주 · 이광재 · 송기현
강득구 · 박용갑 · 전현희
황명선 · 박 정 · 민병덕
박선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원칙적으로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5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음.

한편,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경우 관련 법령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임대하는 경우 용도별로 다양한 대부료율(1%~2.5%)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군사시설의 이전·폐쇄 등으로 발생한 국유재산(이하 “군유휴지”라 함)은 일률적으로 1천분의 15의 요율이 적용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큰 실정임.

군부대 인근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간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등으로 경제적 낙후와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군유휴지가 발생하였을 때 지역사회를 위한 환원이나 특별한 혜택없이 다른 국유재산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사시설 규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부대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군유휴지를 대부받을 때 대부료율을 최저 1천분의 1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국방부에 무상으로 제공한 실적이 있는 경우 국방부 역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군유휴지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상호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중 군사시설의 이전·폐쇄 등으로 발생한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대부받는 경우 연간 대부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 1천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사용·수익한 실적이 있거나 사용·수익 중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반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사시설의 이전·폐쇄 등으로 발생한 일반재산의 대부료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사시설의 이전·폐쇄 등으로 발생한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① (생 략) <u><신 설></u>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중 군사시설의 이전·폐쇄 등으로 발생한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대부받는 경우 연간 대부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 1천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u> ③ <u>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사용·수익한 실적이 있거나 사용·수익 중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반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u> ④ <u>제1항 및 제2항</u> -----
<u><신 설></u>	
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료</u>	

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보증금으로 환산하여 받을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대부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받은 자가 내지 아니한 대부료, 공과금 등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

⑤ -----

----- 제
4항-----
-----.

-----.